

'09. 12. 23(수)

기타안건 심사보고서

- ① 도시관리계획(체리파크CC) 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
- ② 도시관리계획(대영베이스CC) 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

산업건설위원회

기타안건 심사보고서

1. 심사경과

안 건 명	제 안 일자	회 부 일자	상 정 일자	의 결 일자	제안설명	비 고
도시관리계획(체리파크CC) 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	2009. 12.18	2009. 12.18	2009. 12.21,22	2009. 12.22	지역개발 과장	
도시관리계획(대영베이스CC) 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	2009. 12.18	2009. 12.18	2009. 12.21	2009. 12.21	지역개발 과장	

2. 제안설명요지

① 도시관리계획 (체리파크CC) 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

충주시 앙성면 중전리 산 38-1번지 일원에 18홀 규모의 회원제 골프장 조성과 관련하여 용도지역 변경 및 도시계획 시설 결정에 대한 사항을 『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』의 관련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임

② 도시관리계획 (대영베이스CC) 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

충주시 이류면 장성리 산7번지 일원에 기존 18홀 골프장을 9홀 확장하는 27홀 규모의 골프장 건설과 관련하여 용도지역 변경 및 도시계획 시설 결정에 대한 사항을 『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』의 관련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임

3. 주요내용

① 도시관리계획 (체리파크CC) 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

- 사업명 : 체리파크 골프장 조성사업
- 위치 : 충주시 앙성면 중전리 산 38-1번지 일원
- 면적
 - 골프장 : 1,139,643m²
 - 농림지역 686,612m², 보전관리지역 320,036m², 생산관리지역 132,797m², 계획관리지역 198m²
 - 진입도로 : L=530m B=10m
- 사업시행자 : (주)체리파크리조트
 - 충주시 금릉동 720번지(부용빌딩 3층) / 김영희
- 사업기간 : 착공 후 24개월(2012년 완료 목표)
- 총사업비 : 1,031억원(골프장 1,010억원, 진입도로 21억원)

② 도시관리계획 (대영베이스CC) 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

- 사업명 : 대영베이스골프장(9홀 증설) 조성공사
- 위치 : 충주시 이류면 장성리 산7번지 일원
- 면적 : 기존 999,268m² → 변경 1,583,135m²,
- 사업시행자 : (주)대영베이스(이류면 장성리 / 권혁희)
- 사업기간 : 2011년 완료 목표
- 총사업비 : 250억원

4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① 도시관리계획 (체리파크CC) 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

○ 본 안건은

충주시 앙성면 중전리 산 38-2번지 일원에 조성 예정인
18홀 규모의 체리파크 골프장 조성사업에 필요한

농림지역 686,612m²와 보전관리지역 320,036m²를
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변경하고
도시계획시설인 체육시설과 도로로 결정 받고자
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28조 제5항 및
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제7항의 규정에 의거
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임

○ 골프장 조성사업은

스포츠 레저 인구와 관광객을 우리 지역으로 유치할 수 있는
하나의 기반시설로서 작용하는 측면이 있어
관광산업의 경쟁력 확보에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하고,
충주시가 지향하는 관광도시 건설에도 부합되며
지역주민의 소득증대, 세수 증대로 인한
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기여를 하는 사업임

○ 그러나, 통상 골프장 사업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

주변 마을의 민원 및 우려사항인
수질오염, 토양오염 및 대형관정 개발로 인한
주민들의 음용수 부족 등의 우려에 대해서는 철저한 대책을
강구하여야 하며,

해당지역 및 주변지역 주민과의 갈등이나 반목을 최소화하고 주민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야 할 것임

- 본 안건과 관련한 부서별 협의사항 검토 결과로는 사업부지내에 상수원 수질관리를 위해 지정 운영하는 “제3종 수원함양보안림”이 포함(30,545m²)되어 있어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보안림 해제(산림청 승인사항)가 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지며,

또한, 2006년 3월부터 계획 수립되어 추진되고 있는 ‘저전지구 농촌용수개발사업’의 몽리구역이 사업구역내 28필지 72,448m²가 포함되어 있음. 이 부분으로 인하여 저전마을 주민의 피해 및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되어야 할 것임

② 도시관리계획 (대영베이스CC) 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

- 본 안건은 충주시 이류면 장성리 산 7번지 일원에 기존 18홀 대영베이스골프장을 9홀 증설하여 27홀 규모의 골프장으로 조성하고자 하는데 필요한 농립지역 516,880m²를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변경하고 도시계획시설인 체육시설로 결정 받고자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28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제7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임

- 본 안건과 관련한 부서별 협의사항 검토 결과
관련 법규나 절차에 저촉되거나 위반되는 사항은
없는 것으로 사료됨.
- 다만, 골프장 건설 공사시
수질오염, 토양오염, 소음·진동으로 인한 피해 및
마을 앞길 공사차량과 골프장 이용객의 과속으로 인한
통행 불편 등 인근 주민의 우려에 대해서는
철저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하고
사업 추진과정에서 지형 및 산림훼손을 최소화하여
친환경적인 골프장이 건설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임
- 또한, 골프장 종설공사로 인하여
사업지와 직접 인접되는 부연마을 주민에 피해가 발생하지
않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할 것임

5. 질의답변 요지

- ① 도시관리계획 (체리파크CC) 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
 - ▶ 질의 : 사업예정지가 시그너스CC, 소피아그린CC와 연접되어 있는데 환경 등 큰 지장이 없나?
답변 : 환경성검토 등은 환경청에 추후 협의하는 사항임
 - ▶ 질의 : 진입도로 개설 및 확장은?
답변 : 사업주가 부담 시행함. 8m이상 도로를 개설되도록 규정되어있음.

- ▶ 질의 : 지하수 고갈 등 주민 민원사항에 대한 해결은?
주민들과 합의가 이루어졌다?
- 답변 : 사업자측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임
사업 추진초기에 주민들하고 합의가 완료되었음(사업주)
- ▶ 질의 : 농경지 규모는? 농경지에 대한 피해는?
- 답변 : 주변은 대체로 전으로 이루어져 있음.
토사 유출 등으로 인한 피해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음
- ▶ 질의 : 제3종 수원함양보안림과 관련한 것은 어떤 사항인가?
- 답변 : 보안림 면적은 3Ha이고,
현재 2009년 6월 9일 제정된 산림보호법 제11조 제1항 1호 사목에 해제 가능하나 시행령은 내년 3월경에 공포예정임.

② 도시관리계획 (대영베이스CC) 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

- ▶ 질의 : 인근 주민들이 교통사고 예방 대책을 강구해줄 것 요구하고 있고 면지 등으로 인한 불편을 예상하는데,
이외에 다른 민원은?
- 답변 : 소음 교통사고 예방 등 외에는 별다른 사항이 없었음.
- ▶ 질의 : 증설된 부분에 새로 저수조가 설치되나?
- 답변 : 3개소가 계획되어 있음.
- ▶ 질의 : 기존 저수조로 인해서 민원이 접수된 사항이 있나?
- 답변 : 없었음
- ▶ 질의 : 골프장이 부연마을을 둘러싸는데?
식수 등에 있어서 큰 문제 없나?
- 답변 : 식수 부분은 사업자측에서 해결, 큰 문제는 없음.
- ▶ 질의 : 부연마을 입구에 9홀 증설 반대 현수막 게시된 사항은?
- 답변 : 마을 주민들과는 원만한 협의가 되었으나 외지에서 살다가 이주해 온 주민이 반대하는 사항임(사업주)

- ▶ 질의 : 집 균열 및 축산농가에 피해가 있었는데?
답변 : 가가 호호 방문해서 피해 접수된 사례에 대해서는 보상을 완료하였음(사업주 답변)
- ▶ 질의 : 증설된 부분에 도로 개설 예정은?
답변 : 개설 예정 없음

6. 심사결과

- [1] 도시관리계획 (체리파크CC) 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
: 의견서 채택
- [2] 도시관리계획 (대영베이스CC) 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
: 의견서 채택

붙임 의견서 1부. 끝.

의 견 서

□ 의 안 명 : 도시관리계획(체리파크CC) 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

□ 심사경과

- 의안번호 : 제1128호
- 상정일자 : 2009년 12월 21일, 12월 22일
- 의결일자 : 2009년 12월 22일
- 관계법령 :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28조 제5항
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제7항

□ 의 견

사업구역내 '제3종 수원함양보안림'에 대해서는 법률적 검토 후
시행하도록 하고, '저전지구 농촌용수개발사업'과 관련하여는
주민피해 및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.

아울러 골프장 조성공사에 앞서 인근 주민들에 대한 좀 더
폭넓은 이해와 설득으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며,
사업 추진과정에서 환경훼손을 최소화하며 수질오염, 토양오염
및 지하수 고갈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대책을
강구하여 추진하기 바랍니다.

2009. 12. 22.

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

의견서

□ 의안명 : 도시관리계획(대영베이스CC) 변경결정에 대한
의견청취의 건

□ 심사경과

- 의안번호 : 제1129호
- 상정일자 : 2009년 12월 21일
- 의결일자 : 2009년 12월 21일
- 관계법령 :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28조 제5항
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제7항

□ 의견

대영베이스골프장 증설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의 필요성은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. 다만, 골프장 조성공사에 앞서 사업지와 직접 인접되는 부연마을 뿐 아니라 인근 주민들에 대한 좀 더 폭넓은 이해와 설득으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하도록 하고 사업 추진과정에서 환경훼손을 최소화하며 수질오염, 토양오염 및 지하수 고갈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대책을 강구하기 바랍니다.

2009. 12. 21.

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